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5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23154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redacted]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2.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콘크리트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 11. 27. 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5

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7. 23. [redacted]시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과수원 22,228㎡ 중 4,715㎡에 부지를 조성하여 레미콘 제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건설할 목적으로 레미콘제조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4. 원고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류, 중차량 진입이 가능한 제방도로 포장설계서, 골재 비축 야적장 도면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제1차 보완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18. 원고에게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 차량교행이 가능한 도로계획 수립, 환경영향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는 제2차 보완요구를 하였는데, 원고가 진입도로의 폭 등에 관한 일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12. 26. 원고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2015구합21164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6. 10. 선고 2016누4035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은 2016. 6. 28.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6. 6. 27. 다시 레미콘제조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2016. 10. 10.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사. 원고는 2016. 12. 2.경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7. 2.경 환경영향평가 등을 보완하였으며, 2017. 4. 13. 건축허가를 받았다.

아. 한편, 원고는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2016. 12. 중순경 원고가 공장을 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5

축하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2016. 12. 27. 이를 공증받았다.

자.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는 동절기 한파, 하절기 폭염과 중국산 대리석 반입 지연 등의 사유로 지체되었다가 2018. 5.경 완공되었고, 원고는 2018. 5. 8.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차.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취득세 감면 여부를 문의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은 창업일로부터 4년이 지나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구두 통보를 받고, 2018. 5. 24. 피고에게 취득세 등 지방세 합계 52,684,9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카. 원고는 2018. 7. 5. 피고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으로 인한 행정소송 등에 소요된 약 2년의 기간은 창업일부터 4년의 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장건물은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타. 피고는 2018. 7. 23.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파.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5

송 등을 거치며 이 사건 공장의 준공이 2년 이상 지연되었다. 지방세기본법 제18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 기간은 '창업일부터 4년'의 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받아야 함에도,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50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 영역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에서보다는 제약을 받으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5

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20조 제3항은 취득세 면세에 관하여 별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특혜규정으로서 그 면세기간은 문언 그대로 '창업일부터 4년'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행정소송을 거치면서 이 사건 공장의 착공 및 준공이 일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창업에 필요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이나 공장 확보 등의 문제를 미리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원고의 귀책사유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며,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을 법문대로 해석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의 감면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1]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

1) 원고는 처음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할 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만을 요구하였으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2955호, 2014. 12. 31.> 제14조에 의하면, 이 사건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이 적용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5

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단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2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도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 반면, 본문에는 위와 같은 문구를 두지 않은 채 취득세 면제 기간을 일률적으로 '창업일부터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 제1호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가 이루어진 때를 창업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2013. 11. 27.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2014. 12. 31.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위 조항의 법문에 의하면 창업일인 2013. 11. 27.부터 4년의 기간이 지나는 2017. 11. 27.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서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이 그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한 취지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취득세 면제라는 특혜를 부여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창업중소기업이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소송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통상적으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기에 대하여 함부로 예외를 인정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

④ 원고가 2014. 12. 26.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을 받은 이후 2016. 6. 28.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 관련 행정소송을 마칠 때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의 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5

간이 소요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창업일 이후 약 8개월이 지나서야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이 확정된 이후에도 6개월 이상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 등을 진행하였는바, 창업에 필요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이나 공장 확보 등의 문제들을 미리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위험은 원고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⑤ 원고는 관련 행정소송이 확정된 이후 2016. 12. 2.에서야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미비점에 대한 보완 등을 거쳐 2017. 4. 13.에서야 건축허가를 받았는바, 이와 같은 공장 건축의 지연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공장부분등록신청을 할 당시 2017. 8. 31.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고, 2017. 8. 22. 공사지연에 따라 2017. 10. 31.로 공장설립 완료 신고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며, 2017. 10. 16. 및 2018. 1. 19. 각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은 공사 지연의 사유로 주장하는 동절기나 하절기의 계절적 요인이나 중국산 자재 반입의 지연 등은 원고가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이를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⑦ 피고가 과세관청으로서 원고에게 일정 기간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취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가 그러한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공장의 신축 일정을 연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5

재판장 판사 원호신

판사 공두현

판사 김길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5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5

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부칙 <제12955호, 2014. 12. 31.>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 · 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이하 생략) 끝.